

의안번호	제 49 호
의결연월일	2004. 10.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
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10. 15

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49 호
----------	--------

제 출 일 자	2004. 10. 15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 개정(2004. 3. 22)으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개정

○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

⇒ 사천시주민등록 ·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가입조례

나. 보험 가입대상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추가

다.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정의 규정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연 1 백만원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 · 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4. 9. 17 ~ 2004. 10. 8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“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” 를 “사천시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가입조례”로 한다

제1조중 “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” 를 “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”로 하고,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 을 “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) ①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·주민등록증발급·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과 초본의 발급 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②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·인감증명발급 업무 및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 을 “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중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 을 “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조례명 : <u>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<u>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보험의 가입)①시장은 <u>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 략)</p> <p>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<u>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조례명 : <u>사천시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가입조례</u></p> <p>제1조(-----)----- <u>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-----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-----</u> -----</p> <p>제2조(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)①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함은 <u>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·주민등록증발급·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과 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</u> ②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<u>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·인감증명발급업무 및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-----)①----- <u>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-----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-----)----- <u>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-----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①시장은 인감 <u>담당공무원</u>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 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 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<u>인감업무담당공무원</u>으로 하여금 변 상하게 할수 있다.</p>	<p>제5조(-----) ①----- <u>주 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 ----- <u>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</u>----- -----</p>
<p>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①시장은 인 <u>감업무담당공무원</u>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보험료, 보험기간, 기 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<u>인감업무담당 공무원</u>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 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.정 비하여야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.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[별지] <u>인감업무담당공무원</u> 보증보험 관리대장</p>	<p>제6조(-----)①----- <u>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<u>주민등록·인 감업무담당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[별지] <u>주민등록·인감업무담당공무원</u> 보증보험 관리대장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住民登錄法

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인감증명법시행령

제20조 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